

의안 번호	526
----------	-----

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행 정 기 획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10. 17.

전문위원 김동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김육영의원 외 20명

나. 의안번호 : 제526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9. 25.

라. 회부일자 : 2025. 10. 14.

2. 제안이유

- 화재로 인하여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신체적, 재산적인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 거주시설 및 긴급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심리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,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지원 내용(안 제5조)
- 라. 지원 취소 및 환수(안 제6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재해구호법」,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5. 9. 30. ~ 2025. 10. 4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제정안은 주택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3항 및 제4항¹⁾에 따르면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과 피해 시설의 복구를 지원할 수 있으며,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원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 본 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, 법적 근거와 제정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, 2017. 1. 17., 2020. 8. 18., 2023. 5. 16. >

1. 사망자·실종자·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
 2.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
 3.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
 4. 자금의 융자, 보증, 상환기한의 연기,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
 5.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
- 5의2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
6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, 통신요금,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
 7. 주 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(鹽生產業)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
 8.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
 9.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
-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7. 1. 17., 2024. 1. 16., 2025. 4. 1. >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8. 6. >

- 최근 3년간 성북구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, 총 69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1명, 부상자 32명 등 인명 피해가 있었고, 재산 피해액은 약 14억 3천만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 지원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.

최근 3년간 성북구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

구 분	화재건수	인명피해			재산피해 (천원)
		계	사망	부상	
합 계	690	34	1	32	1,436,727
2022	158	14	1	13	338,543
2023	246	8	-	8	405,784
2024	286	12	1	11	692,400

* 출처 : 국가화재정보시스템(www.nfds.go.kr)

□ 주요내용

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'화재피해주민'의 범위를 성북구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성북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,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'화재피해주민'의 생활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4조(지원대상)는 고의적 화재나 경미한 피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, 긴급한 경우 구청장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에 따른 유연한 행정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5조(화재피해주민 지원 등)는 임시주거시설 지원, 심리상담 등 지원 항목을 정하고, 피해자가 직접 또는 가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, 구체적인 방법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.
- 안 제6조(지원 취소 및 환수)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,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.
- 안 제7조(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)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, 민간기업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 제공,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역 사회의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.
- 참고로 서울시를 포함하여 11개 자치구(영등포, 은평, 양천, 광진, 송파, 금천, 동대문, 성동, 관악, 중구)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